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1일,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0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 의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서기영 전문위원)

개정안은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소방복지위원회”라 함)의 위원을 현행 “10인”보다 확대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② 소방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5명-----
--.

③ -----
-----다음 각 호의 사람-----

-----.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소관----전문적으로 심의하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생략) <u><신설></u> <u><신설></u>	⑥ (현행과 같음) <u>⑦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u> <u>⑧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소방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3)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은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3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현재 소방청은 민간위원 3인, 공무원인 위원 7인 총 10명의 위원으로 소방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인 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민간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소방복지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위원 구성(10명)
위원장(1명)	소방청 차장
정부위원(6명)	소방청(3), 행정안전부(1), 기획재정부(1), 보건복지부(1)
민간위원(3명)	교육인 (3)

※ 자료: 소방청

또한, 소방복지위원회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소방복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 가능성을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법률상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위원 수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민간위원 확대라는 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비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⁵⁾은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제안이유에 특별한 실시 없이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였는데(안 제9조제3항제3호),

현재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⁶⁾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역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동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될 전망인데, 대통령령에서 규정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그 밖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6) 「소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 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청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활한 법 집행과 적법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⁷⁾.

개정안에 대해 소방청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분야 위원회에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참고 1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회 구성) 15명(위원장 1, 공무원 6명, 민간위원 8)

－ 보건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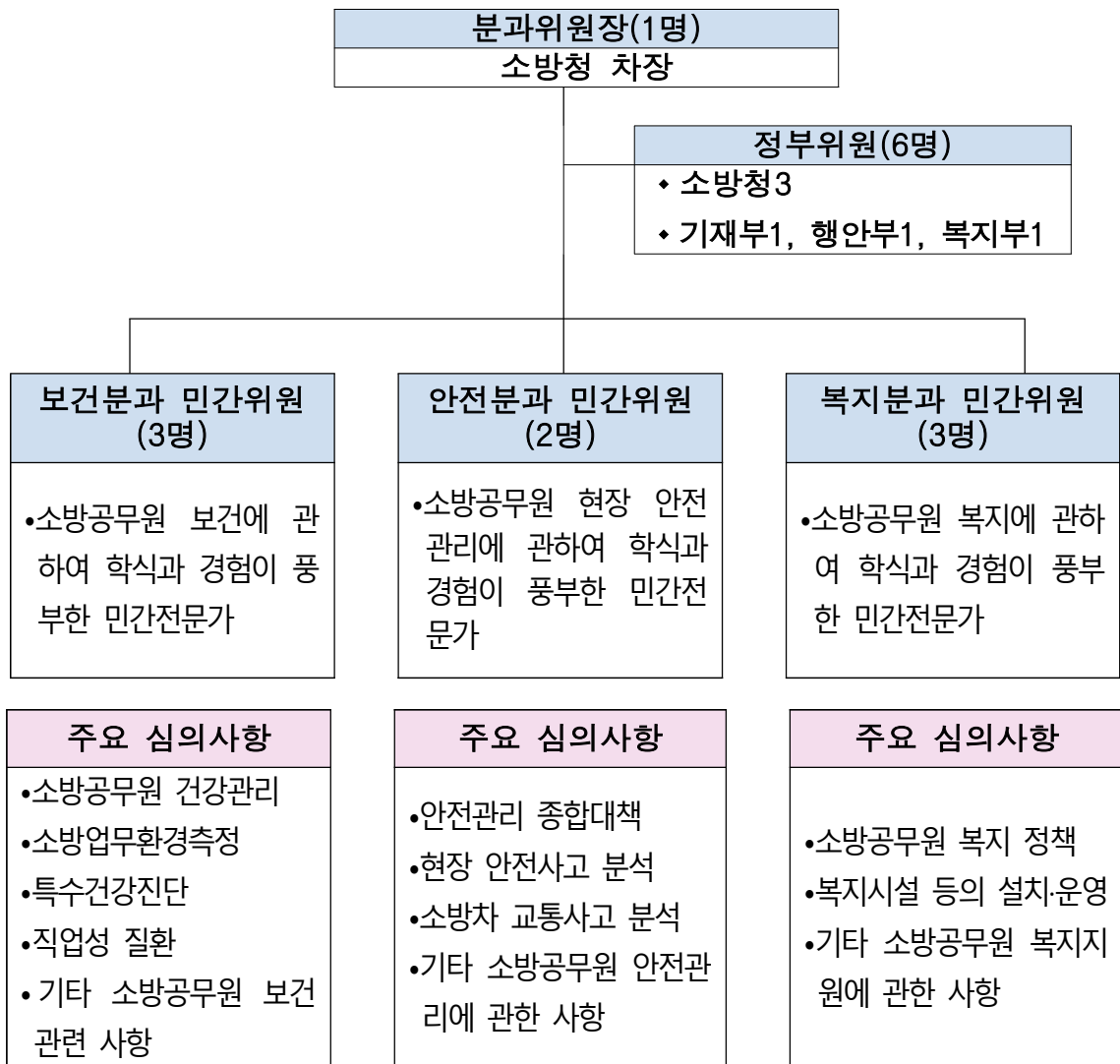
： 10명[분과위원장(소방청 차장) 1, 공무원 6, 민간위원 3]

－ 안전분과

： 9명[분과위원장(소방청 차장) 1, 공무원 6, 민간위원 2]

－ 복지분과

： 10명[분과위원장(소방청 차장) 1, 공무원 6, 민간위원 3]



※ 자료 : 소방청

참고 2

소방복지위원회 활동 내역(최근 3개년)

구 분	총계	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	1		1
2022년	2	2		2
2023년	1	1		1
총계	4	4		4

※

자료 : 소방청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개정안은 민간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법문에 명시하고, 하위법령 준비 기간 및 외부위원 추가 위촉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의 시행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민간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법문에 명시하고, 하위법령 준비 기간 및 외부위원 추가 위촉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의 시행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후단 신설 및 부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u><신 설></u>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 <u>-다음 각 호의 사람-</u> ----- -----. <u><후단 신설></u> 1. <u>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u>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위원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u>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 1. ~ 3. (개정안과 같음)

④ (생략) ⑤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u> ⑥ (생략) <u><신설></u>	<u>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2.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u> 3. <u>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u>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⑤ <u>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⑥ (현행과 같음) ⑦ <u>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u>	④ (개정안과 같음) ⑤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u> ⑥ (개정안 제5항과 같음) ⑦ (개정안 제6항과 같음) ⑧· ⑨ (개정안 제7항 및 제8항과 같
---	--	---

	<u>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u> <u>⑧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음)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 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⑨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생략)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u>15명</u> ----- -----.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u>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u>	③ ----- ----- <u>다음 각 호의 사람</u> ----- ----- ----- <u>.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
<u><후단 신설></u>	
<u><신 설></u>	1. <u>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신 설></u>	2.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u>
<u><신 설></u>	3. <u>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u>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⑥ (생 략)</u>	<u>⑦ (현행 제6항과 같음)</u>
<u><신 설></u>	<u>⑧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u>
<u><신 설></u>	<u>⑨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